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2019.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제 1 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966-1, 2포대와 11방공단 포진지부대가 편입됨에 따라 부대의 작전 및 훈련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서 966-1, 2포병대대내 군사시설 통합이전 및 11방공단 진지이전이 필요함.

-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시 국방부 협의조건에 따라 군부대 3개소, 시설 1개소 이전을 추진(기부對양여 사업)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1 계획의 추진 근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

<표 1 -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는 기부대양여 사업이 해당됨.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시행자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 ·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 ·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근거

○ 본 “파주 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군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협의하여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구 분	계획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1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가. 택지개발 조성공사

○ ‘07.06.28 : 파주운정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08.12.31 :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인

○ ‘11.10.26 :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 ‘12.04.05 : 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 ‘12.10.15 : 토지보상 착수

○ ‘14.09.19 :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승인

○ ‘14.10.29 : 지구지정 변경(4차)

○ ‘14.11.12 : 조성공사 착공(1, 4공구)

* 966-2포대, 조성공사 4공구 간섭

○ ‘15.12.28 :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 ‘16.07.05 :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4차)

○ ‘16.12.29 : 지구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5차), 실시계획 변경(3차)

○ ‘16.12.30 : 조성공사 착공(3, 6공구)

* 2·5·7공구 미착공, 966-1포대 조성공사 7공구 간섭)

나. 군사시설 이전사업

<사전협의>

○ ‘07.09.12 : 운정 3지구 지구지정 관계기관 사전협의
○ ‘08.10.30 : 운정3 개발계획 승인 협의의견 (국방부)
* 966-2,3포대, 전시 지휘소, 둥글봉 방공진지, 51-3포대 진지
: 군부대가 요구하는 지역으로 이전 (조건부동의)
○ ‘12.07.25 : 파주운정 3지구 군시설 협의요청 (LH→9사단)
* 966-2,3포대, 전시지휘소, 둥굴봉방공진지, 대대포진지 이전협의
○ ‘12.07.26 : 방공진지 이전에 따른 협의요청 (LH→1군단장)
* 방공진지 및 이전예정지 현황(각 시설물 현황, 이전지역 배치계획) 협의요청
○ ‘12.09.27 : 군시설 협의요청 검토결과 (9사단→LH)
* 966-2,3포대 → 966 본부포대 통합이전, 둥굴봉 방공진지
→ 심학산진지, 51-3포대→966-2포대로 이전
○ ‘12.10.04 : 방공진지 이전 작정성검토 결과 (제2731부대→LH)
* 둥굴봉 방공진지 → 심학산, 봉서산 진지 이전 및 이전지 배치계획 및 시설물소요
○ ‘12.10.09 : 대체군사시설 양여대장재산 검토 요청 (LH→9사단)

<이전건의 협의(1차)>

○ ‘12.11.13 :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제출(LH→국방부)
* 양여 50,066㎡, 기부 : 118,170㎡
○ ‘13.01.25 : 군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승인(국방부)
○ ‘13.07.16 :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1차 연장 요청(LH→국방부)
* 관계기관 협의의 추가적인 시간소요가 필요하므로 제출기한 연장 요청
○ ‘13.07.23 :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1차 연장 승인(국방부→LH)
* 2013.07.24 → 2013.10.24 (3개월 연장)
○ ‘13.11.14 :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2차 연장 요청(LH→국방부)
○ ‘13.11.14 :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2차 연장 승인(국방부→LH)
* 2013.11.19 → 2014.02.19 (3개월 연장)
○ ‘14.02.17 :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계획 알림 (LH→국방부)
* 감정평가 시행한 결과 당초 사업방식 승인 시 보다 기부와 양여재산의 격차가 과도하고, 전시지휘소 이전부지 확정하여 별도 대책을 마련 후 사업방식 승인 재신청 추진
○ ‘14.02.18 : 군사시설 이전사업 협의종결 (국방부→LH)

<이전건의 협의(2차)>

○ ’14.10.24 : 3지구 편입 군부대(시설) 이전 관련 협의 (LH→국방부)

* 966-2포대가 운정 3지구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사업추진 전 기부대양여사업 등 이전방식에 대한 협의

○ ’14.10.29 : 3지구 편입 군부대 이전 관련 협의 회신 (국방부→LH)

* 이전방식 선정을 위해 軍 작정성 검토,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등 종합 검토할 예정

○ ’14.12.07 : 운정 3지구 군시설 이전협의 (LH→9사단)

* 51-3포대 진지 현 위치 존치, 대대지휘소인근녹지 고지대 이전 요청

○ ’15.01.27 : 운정 3지구 군시설 이전 협의 검토결과 (9사단→LH)

* 51-3포대 진지 현 위치 존치 동의, 대대지휘소 재검토

○ ’15.04.30 : 운정 3지구 대대지휘소 이전 협의 (LH→9사단)

* 대대지휘소 51-B포 진지 좌전방 위치 요청

○ ’15.05.11 : 966-2포대 시설물 현황 제출 (9사단→LH)

○ ’15.05.14 : 방공진지 이전 협의 (LH→11방공단)

* 11방공진지 시설물 현황 요청

○ ’15.05.18 : 방공진지 이전 배치안 (육군2731부대→LH)

○ ’15.05.18 : 대대 지휘소 이전 예정지 적정성 검토결과 (9사단→LH)

* 지휘소 이전예정지(51-B포대 좌전방 위치) 조건부 동의

○ ’15.05.20 : 군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제출 (LH→국방부)

* 양여 88,787㎡, 기부 111,878㎡

○ ’15.06.10 : 군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보완 제출 (LH→국방부)

○ ’15.06.17 : 기부대양여사업 보류 통보 (국방부→LH)

* 기재부 별도 지침 마련시까지 당분간 보류,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기재부 사전승인 필요

<이전건의 협의(3차)>

○ ‘15.07.17 : 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 자료협조 요청 (LH→9사단)
  * 양여 재산 목록에 누락(추가)된 시설물 검토 요청
○ ‘15.08.12 : 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 양여재산 현황 제출 (9사단→LH)
○ ‘15.09.15 : 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 양여재산 현황(추가) 제출 (9사단→LH)
○ ‘15.10.21 : 기부대양여 사업 향후 추진계획 협의 (국방부, LH)
  * 신규 사업 보류요청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계획 협의
○ ‘15.11.23 : 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 양여 재산 세목조서 제출 (LH→9사단)
  * 토지 88,787㎡ 건축물 93동, 공작물 108식, 임목죽 2식
○ ‘16.03.29 : 군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제출 (LH→국방부)
  * 양여 88,787㎡ 기부 111,878㎡
○ ‘16.05.20 : 군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승인 (국방부→LH)
○ ‘16.09.30 : 이전사업 시설기본요구조건 통보 (9사단→LH)
○ ‘16.10.06 : 이전사업 시설기본요구조건 수정 통보 (9사단→LH)
○ ‘16.10.13 :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연장 요청 1차 (LH→국방시설본부)
○ ‘16.10.19 :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연장 승인 1차 (국방시설본부→LH)
  * 2016.11.20→2017.02.20 (3개월 연장)
○ ‘17.01.16 :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연장 승인 2차 (국방시설본부→LH)
  * 2017.02.20→2017.05.20 (3개월 연장)
  * 국방부 제출기한 1개월 전인 2017.04.20.(목)까지 합의각서(안) 작서 및 제출
○ ‘17.02.28 : 이전사업 추가 부대요구 사항(통보) (9사단→LH)
○ ‘17.03.07 : 운정3지구 기부대양여 사업 합의각서(안) 초안 제출 (LH→국방시설본부)
○ ‘18.07. ~ 18.12. : 국토연구원 검토 완료
○ ‘19.02. : 합의각서(안)체결 (LH→국방시설본부)
○ ‘19.03.19. : 합의각서(안) 승인 (국방시설본부→LH)

나. 향후 추진계획

○ 2019. 06. ~ 0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평가준비서 심의
○ 2019.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14일간)
○ 2019.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19. 11. ~ 12. : 주민공람・공고
○ 2019. 12. : 주민의견 취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 2020. 01. ~ 02.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 2020. 03.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국방부→환경부)

1.4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파주 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월롱면 덕은리 일원

다. 면　　적 : 217,014㎡

○ 966포대 : 217,014㎡(93필지)

<표 1 - 3> 지목 및 소유자별 토지세목 현황

구 분	단 위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비 고
임 야	필 지	25	13	12	
	㎡	75,517	33,203	42,314	
구 거	필 지	14	12	2	
	㎡	2,531	2,316	215	
대 지	필 지	2	-	2	
	㎡	1,065	-	1,065	
전	필 지	9	5	4	
	㎡	7,971	3,031	4,940	
답	필 지	15	1	14	
	㎡	13,984	96	13,888	
잡종지	필 지	19	19	-	
	㎡	109,987	109,987	-	
공 장	필 지	4	-	4	
	㎡	3,271	-	3,271	
도 로	필 지	5	1	4	
	㎡	2,678	2,313	365	
계	필 지	93	51	42	
	㎡	217,014	150,946	66,068	

라. 계획기간 : 사업계획승인 일 ~ 2022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사업본부장)

바. 승인기관 :국방부

사. 사 업 비 : 82,000백만원

(용지비: 34,056백만원, 공사비: 41,940백만원, 부대비: 6,005백만원)

아. 근거법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기부대양여사업"

자. 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철거를 최소화하는 배치

○ 기존부대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작전공백 없는 배치

○ 기존지형 최대한 이용하여 절·성토량을 최소화하는 배치

○ 기존시설 연계를 고려한 지구별 특성에 부합하는 공간배치

○ 각 부대별 공간구성에 최대한 부합하는 동선 체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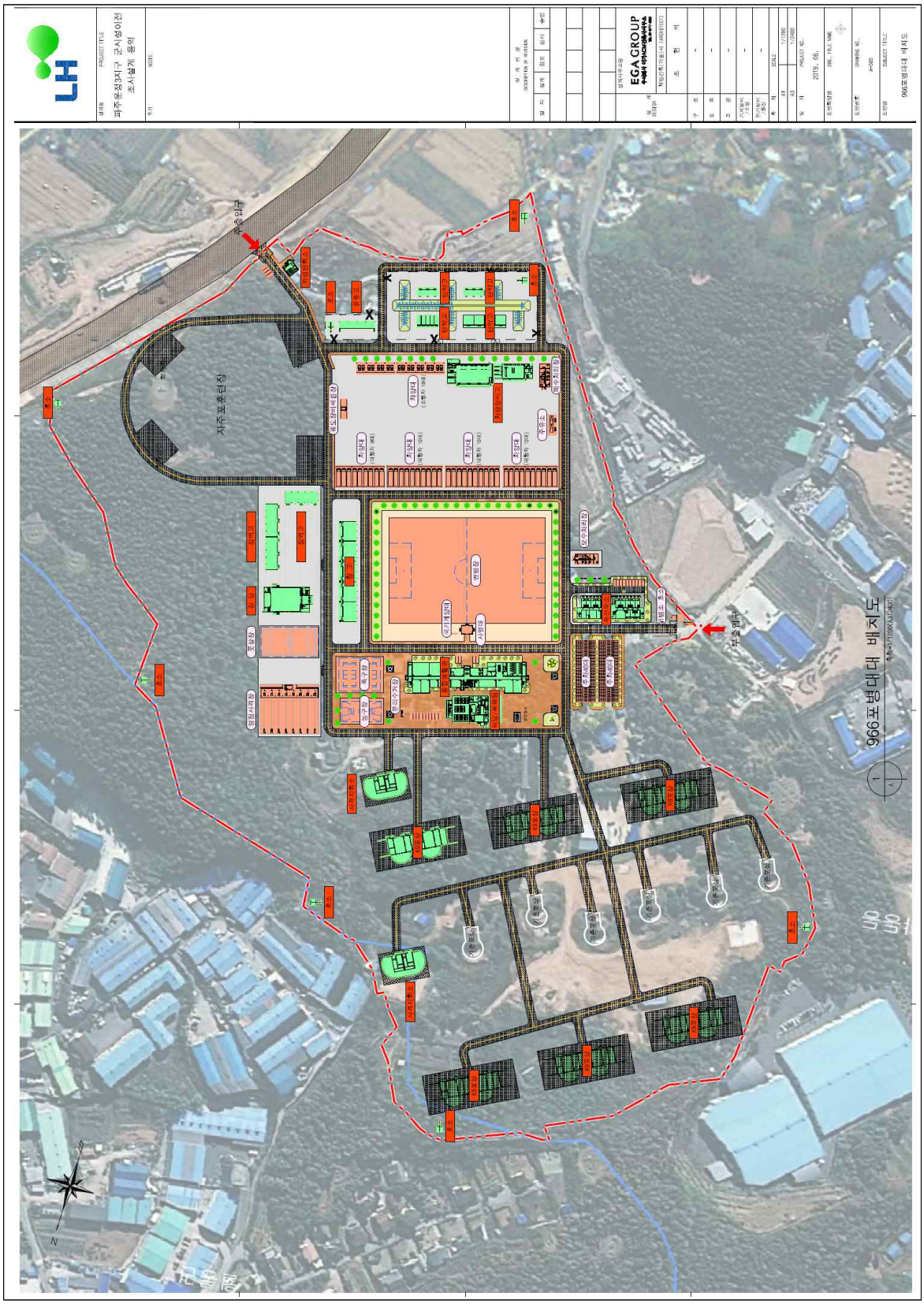
○ 주 진입도로 및 각 시설 진입로 등은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의 분리

○ 이용 빈도에 따른 적절한 도로 확충 및 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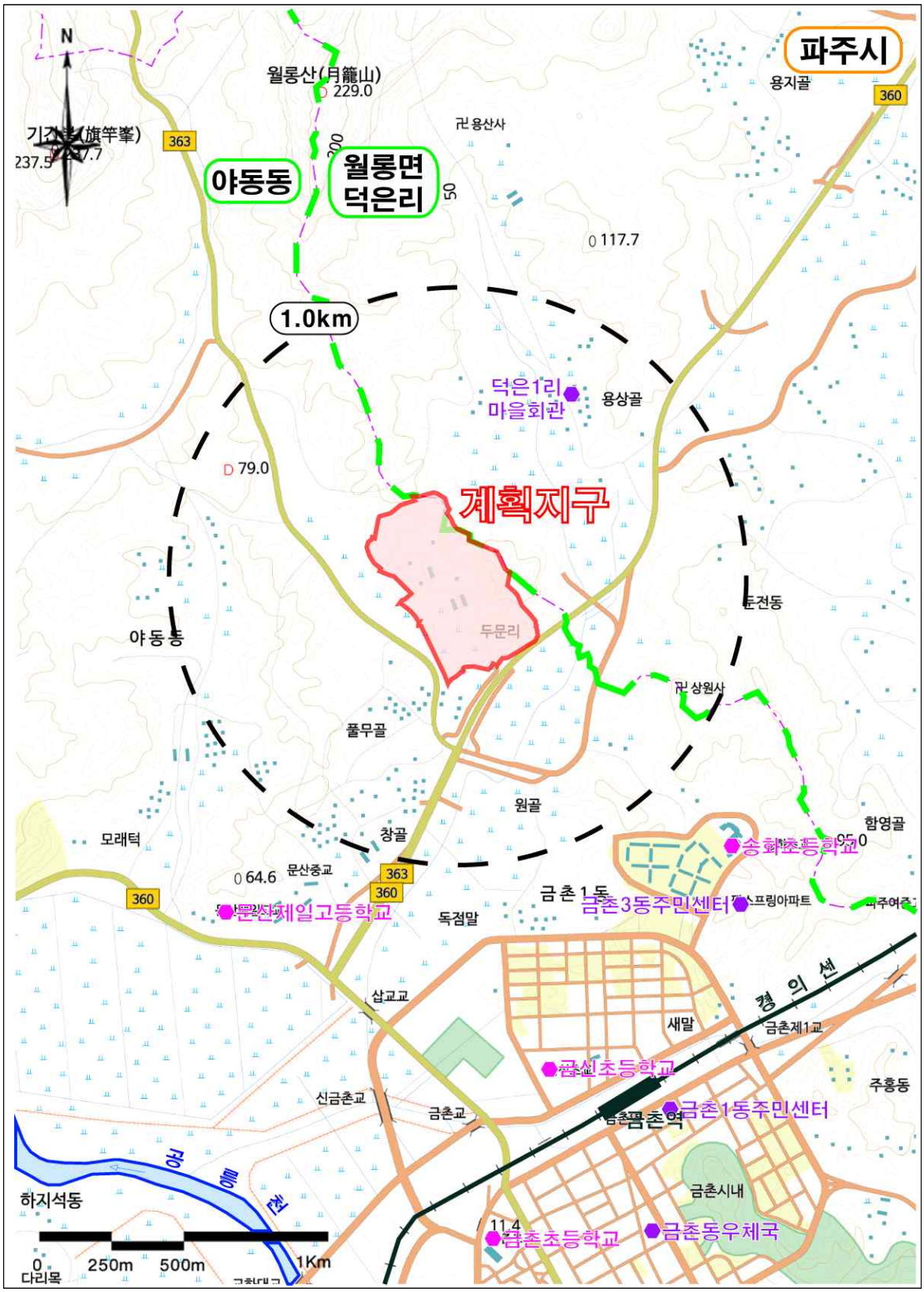
(2) 건축계획

<표 1 - 4>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면 적	비 고
시설물	966포대	· 건 물: 34동 · 공작물: 60식	· 연면적: 15,814.72㎡	



<그림 1 - 1> 966포대 시설배치계획도


N
파주시
월롱산(月籠山)
229.0
기자봉(旗竿峯)
237.5
363
야동동
월롱면
덕은리
용지골
360
귀 용산사
117.7
1.0km
덕은1리
마을회관
용상골
79.0
계획지구
두문리
운전동
야동동
귀 상원사
풀무골
원골
함영골
모래턱
창골
64.6
문산중교
363
360
360
금촌3동주민센터
스프링아파트
독점말
삽교교
새말
금촌제1교
경의선
신금촌교
금촌교
금촌1동주민센터
주흥동
하지석동
금촌시내
11.4
금촌동우체국
0
250m
500m
1Km
다리목

<그림 1 - 2> 위치도

제 2 장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2.1 대상지역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편에서 도출된 주요 평가항목, 즉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예측·분석한 후 설정하였음.

○ 주요 평가 내용과 평가 항목을 도출하여 항목별로 영향권을 설정하였으며, 본 평가에 반영된 예측 및 분석기법과 내용,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여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표 1 - 5> 평가 대상지역의 범위

항 목			현황조사 범위	예측범위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약 0.3㎞
		자연환경자산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약 0.3㎞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 질	○계획지구 및 인접영향권 ○환경질 측정지점 -하천수질 2지점 -지하수질 2지점	○계획지구 및 하류수계, 주변 인접영향권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파주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대기질 온실가스	○계획지구 및 인접영향권 ○환경질 측정지점 : 2지점	○계획지구 및 인접영향권 약 0.5㎞
		악 취	○계획지구 및 인접영향권 ○환경질 측정지점 : 1지점	○계획지구 및 인접영향권 약 0.5㎞
		토 양	○파주시 및 계획지구 ○환경질 측정지점 : 3지점	○계획지구
		소음·진동	○계획지구 및 인접영향권 ○환경질 측정지점 : 2지점	○계획지구 및 인접영향권 약 0.5㎞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파주시	○계획지구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지구	○계획지구
		인구·주거	○파주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표 1 - 6> 전략환경평가 항목별 평가 대상지역 설정

항 목			선 정 사 유	검 토 사 항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 변화 ○동·식물상 변화의 예측 및 대책 ○동·식물상 종 분포 상황 및 보전대책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공사시 절토에 따른 지형변화	○토공발생량 분석 및 대책수립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자료 분석
	수환경의 보전	수 질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사업시행에 의한 오수발생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 ○오수 처리대책 강구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기상 현황조사	○최근 10년 기상연보
		대기질 온실가스	○대기질 현황조사 ○장비가동 및 차량운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악 취	○악취 현황조사	○악취 유발 시설 조사
		토 양	○공사장비의 폐유로 인한 토양오염발생	○토양오염 저감대책
		소음·진동	○장비운영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장비소음) ○장비가동 및 차량운행에 의한 소음·발생	○장비가동 및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강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통계자료를 이용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기존자료를 이용, 발생폐기물 예측 및 처리대책 강구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대책
		인구 및 주거	○인구 및 주거 현황	○인구 및 주거의 변화

2.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등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 제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개발기본계획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였음.

<표 1 - 7> 평가항목의 선정 사유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행정계획과의 일관성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
나)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검토	○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각종 보호지역 및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포함, 심대한 영향 및 훼손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	○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포함, 주요 산림축 훼손,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등을 검토	○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계획 수립에 따른 주변 경관 영향 검토	○
4) 수환경의 보전 (수질)	○각종 수 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검토	○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대기, 온실가스, 악취, 토양, 소음・진동)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달성 여부 검토	○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필요여부 및 필요시 공급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 적정 여부 검토	○
3)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검토	○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검토	○

나.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평가항목별 조사 및 예측방법의 세부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각 항목별 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며, 각 항목별 영향예측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본 계획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1 - 8>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 방법

평가항목	현황조사	예측방법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 ·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 육수생물상 등 현황조사 및 자연환경자산 현황조사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현지조사, 탐문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기존자료 등을 고려한 녹지자연도, 순 생산량, 현존량 분석 ○기존문헌 및 자료를 정량적으로 조사, 정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 · 분석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 · 지질)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 및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 지질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분석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조사내용 : 주요 경관자원 및 주변 경관현황 ○문헌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분석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검토
4) 수환경의 보전 (수질)	○조사내용 : 하천수질 및 오염원 현황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계획지구, 주변수계의 현황파악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류수계 수질변화 검토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대기, 온실가스, 악취, 토양, 소음 · 진동)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 기상, 대기질, 악취, 토양 및 소음 · 진동현황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최근 기상현황 통계자료 분석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기준(대기질, 악취, 토양, 소음 · 진동)의 유지 · 달성에 대한 검토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환경기초시설 공급 필요 여부에 대한 정성적인 검토
3) 자원 · 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방안 검토
다) 사회 · 경제환경과의 조화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인구 및 주거 현황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검토 ○인구 및 주거의 변화

제 3 장 의견수렴 계획

3.1 주민의견 수렴 개요

○ 본 계획인 “파주 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5조」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타 법에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3.1.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1안)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

<표 1 - 9> 주민의견 수렴 방안

구분	법령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구분	법령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 공람 등)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15조(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 · 군 · 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 · 군 · 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2 타 법(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2안)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타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

<표 1 - 10>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구분	법령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1 - 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내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국방 · 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방 · 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예정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6.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9.>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국방부장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9.> ⑧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9.> 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7.2 의견수렴 계획

○ 타 법(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타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구분	법령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본 계획의 승인기관인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hwwp://www.dia.mil.kr), 파주시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것임.

○ 또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할 것임.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본 계획의 승인기관인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주관부서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공람장소는 국방시설본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제 4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경위

5.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심의

○ 본 “파주 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하였음.

5.1.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진경위

○ 2019. 08.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및 협의회 구성 요청

○ 2019. 08. 27. ~ 09. 25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5.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5.2.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가. 내 용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일시 : 2019년 08월 27일 ~ 2019년 09월 25일

나. 협의회 심의위원 명단

위원구성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위원장	국방부 국방환경협력팀	국방환경협력팀장	김공현	
위원	국방부 국방환경협력팀	주무관	홍혜진	공무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환경주사	박향미	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준규	전문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공민지	공무원
	파주시 도시개발과	신도시개발팀장	윤주영	공무원
	파주시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장	심재우	공무원
	김포대학교	교수	조진규	전문가
	공존연구소	교수	김연미	전문가
	통장협의회	통장협의회장 7통장	이윤희	시민단체
	통장협의회	8통장	문관배	주민대표

다. 협의회 개최 알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방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요청

1. 관련근거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9조
   나. 인천파주단지사업1부-3044(2019.8.2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요청(운정3지구 00군부대 이전사업)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이 "붙임 2" 와 같이 위촉되었습니다.

3.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의견 수렴 내용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송부하오니 검토 후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기간 : 2019. 8. 27 ~ 2019. 9. 25. (30일간)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의견서 제출방법 : 공문, 이메일(hyejin0801@korea.kr), 팩스(02-748-5819)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1부 (별송)
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명단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양식) 1부. 끝.

국방부장관

수신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환경부장관(환경영향평가과장), 환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파주시장(환경보전과장), 길포대학교장, 경기연구소장, 이엘화, 문근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협조자

시행 국방환경협력팀-3656 접수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http://www.mnd.go.kr

전화 02-748-5864 / 전송 02-748-5819 / hyejin0801@mnd.mil / 비공개(2.5)

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 반영 여부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국방부 국방환경 협력팀 주무관 홍혜진	Ⅰ. 총괄의견		
	○파주시 내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이에 따른 대안 설정·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함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제시된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이에 따른 대안 설정·평가 등을 실시하겠음	
	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계획부지와 주변 지역의 지형·수계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설정함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수계 등을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설정하였음	
	2. 토지이용 구상안		
	○계획부지는 생태·자연도 2, 3등급 지역으로써 지형 및 생태계 현황을 고려하여 훼손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계획지구의 지형 및 생태계 현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음	
	3. 대 안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시 일시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구체화하여 조치할 것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겠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기준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측정 및 예상하여, 이에 따른 저감방안 및 대책을 구체화하여 조치할 것	○소음·진동 현황조사, 영향예측 등 환경기준의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저감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것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겠음	
	6. 기 타		
	○없음	○의견 없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주무관 박향미	Ⅰ. 총괄의견		
	○본 계획은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시 국방부 협의조건으로 군부대와 및 관련시설을 지구외(내)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동 계획과 관련된 상위·관련계획을 제시하고 연계성·부합성 등을 검토하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본 계획과 관련된 상위·관련계획을 제시하고 연계성·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토지이용 구상안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 지형, 식생, 경관, 주변지역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 지형, 식생, 경관, 주변지역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겠음	
	2.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현황조사는 계절적으로 특성을 반영하여 동·식물상 조사 시기, 조사 횟수, 동·식물 출현, 생육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동·식물상 조사 시기, 조사 횟수, 동·식물 출현, 생육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계획부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생태계 단절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생태계 단절과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계획지구 주변에 위치한 정온시설을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소음·진동, 분진 등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계획지구 주변에 위치한 정온시설을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소음·진동, 대기질 등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과 함께 요약서를 비치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 실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겠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선임연구원 최준규	Ⅰ. 총괄의견		
	○본 사업은 기존 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이므로 이전하게 되는 기존부대의 경우 토양오염 등 군부대의 장기주둔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에 집중 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적인 측면 및 인근 민간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입지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적 입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검토 자료를 제시하겠음	
	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신규로 이전하게 되는 주둔지(11방공단, 대대지휘소, 966 포대 추가부지)를 확정하고 있는 바, 해당지역이 최적의 입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검토자료가 필요할 것임	○최적 입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검토 자료를 제시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의견 없음	
	3. 대 안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측면에서 최적 입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검토 자료가 필요함	○최적 입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검토 자료를 제시하겠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신규 입지의 경우 생태, 지형지질 및 소음・진동 항목, 기존 부지의 경우 토양 오염, 폐기물 항목 등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함	○기존 부지의 경우 토양 오염, 폐기물 항목 등에 대한 중점검토 항목으로 검토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의견없음	○의견 없음	
	6. 기 타		
	○의견없음	○의견 없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박혜인	Ⅰ. 총괄의견		
	○동 사업계획은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부대양여 조건으로 군사시설(966-1, 966-2 포대)을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216,922㎡)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해야 함 ○동 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함	○본 계획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본 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하겠음	
	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지구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공사차량 진·출입로와 그 주변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 ○사업지구 주변에 운영 및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였으며,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사업지구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공사차량 진·출입로와 그 주변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사업지구 주변에 운영 및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동 계획과 관련되는 기존 개발계획, 상위계획,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제시해야 함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제시	○동 계획과 관련되는 기존 개발계획, 상위계획,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제시하겠음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제시하겠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박혜인	3. 대 안		
	○대안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설정된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도출	○대안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설정하겠음 -설정된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도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17.11.27)」에 따라 충실히 작성해야 함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 -문헌조사를 활용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지구와 환경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정맥(지맥포함) 등]과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를 분석·제시 ○영향예측 및 결과는 저감방안 강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 -저감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하되 그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제시할 것이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17.11.27)」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겠음 -현황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하겠음 -문헌조사를 활용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할 것이며,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사업지구와 환경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정맥(지맥포함) 등]과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를 분석·제시하겠음 ○영향예측 및 결과는 저감방안 강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음 -저감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하되 그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박혜인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특히, 법정보호종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중점 제시 ○(대기질, 온실가스) 사업시행 전·후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다양한 저감방안 마련 ○(수질) 공사 시 및 운영 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용수공급계획, 오수처리계획(오수발생량, 처리방법, 방류수 수질 등), 수질오염총량 할당 등 구체적인 자료 제시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토양)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실측조사를 통해 적정 처리방안을 수립·제시 -특히 사업부지는 군사훈련시설로서 토양오염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및 처리계획에 대한 방안을 수립·제시해야 함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에 대한 성상별 처리계획 검토·제시 ○(소음·진동)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등)을 누락되지 않게 정확히 파악하고, 영향예측 결과를 면밀히 분석·제시 -운영 시 사격훈련 등으로 인해 소음·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제시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할 것이며,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특히, 법정보호종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중점 제시하겠음 ○(대기질, 온실가스) 사업시행 전·후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저감방안 마련하겠음 ○(수질) 공사 시 및 운영 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용수공급계획, 오수처리계획(오수발생량, 처리방법, 방류수 수질 등), 수질오염총량 할당 등 구체적인 자료 제시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토양)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실측조사를 통해 적정 처리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토양오염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및 처리계획에 대한 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에 대한 성상별 처리계획 검토·제시하겠음 ○(소음·진동)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하겠음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등)을 누락되지 않게 정확히 파악하고, 영향예측 결과를 면밀히 분석·제시 -운영 시 사격훈련 등으로 인해 소음·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제시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박혜인	○(경관) 근·중·원경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제시	○(경관) 근·중·원경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함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겠음	
	6. 기 타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를 작성·제시해야 함	○제시된 심의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겠음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를 작성·제시하겠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파주시 도시개발과 신도시개발 팀장 윤주영	Ⅰ. 총괄의견		
	○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 아래와 같이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충실히 반영·조치 될 수 있도록 요청함	○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시하겠음	
	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1공단 포진지가 이전하는 심학산 진지 일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누락되어 포진지 이전에 따른 직·간접 환경적 영향분석을 위해 추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도록 조치	○11공단 포진지가 이전하는 심학산 진지 일원은 추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966포대 통합이전부지 남동측의 경우, 산림식생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시 산림훼손 최소화 및 자연환경(식생, 동·식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계획지구 남동측에 산림식생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시 산림훼손 최소화 및 자연환경(식생, 동·식물)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음	
	3. 대 안		
	○파주 운정3지구 택지조성 사업부지 내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계획은 신도시개발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주변지역 환경영향 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인 군작정성 유지를 위해 금회 군사시설 이전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사업대상지 약600m 반경 내 파주시에서 먹는물공공시설(파주시-16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솥우물 약수터(월롱면 덕은리 178-1)가 위치하고 있어, 해당지역 지하수질 측정위치 추가조치가 필요함	○해당지역 현장조사후 추가조치 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해당지역 주민들이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금회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및 주민의견은 적극수렴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겠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파주시 환경보전과 대기관리 팀장 심재우	Ⅰ. 총괄의견		
	○평가준비서 안에 이견이 없으나 장비이동 등 훈련시 대기오염물질(특히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검토에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군사훈련시 장비이동 등으로 대기오염물질(특히 비산먼지)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하겠음	
	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준비서 의견에 동의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평가준비서 의견에 동의함	-	
	3. 대 안		
	○평가준비서 의견에 동의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준비서 의견에 동의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평가준비서 의견에 동의함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겠음	
	6. 기 타		
	○별도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김포대학교 교수 조진규	Ⅰ. 총괄의견		
	○본 계획은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시 국방부 협의조건에 따라 군부대 3개소, 시설 1개소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시 국방부 협의조건에 따른 사업이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인접 지역의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개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본 계획지구 인접 지역의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은 일부 토지가 개발지이고 군사시설의 특성상 공사단계의 환경영향요소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영단계에서는 상주인원에 따른 용수, 오수, 비점오염물질, 생활폐기물 발생, 시설물 난방 및 차량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군용장비로 인한 소음발생 및 유류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의 환경영향요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의 운영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시 상주인원에 따른 용수, 오수, 비점오염물질, 생활폐기물 발생, 시설물 난방 및 차량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군용장비로 인한 소음발생 및 유류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항목등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대체로 적정함	○적정함	
	3. 대 안		
	○적정함	○적정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대체로 적정하나 사업지구 북측에 임상이 양호한 산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항목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요구됨	○계획지구 북측 산지를 포함하여 동·식물 조사를 시행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택지개발 등으로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군사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겠음	
	6. 기 타		
	○ 의견없음	○의견 없음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공존연구소 교수 김연미	Ⅰ. 총괄의견		
	○분산된 군사시설의 통합을 위한 이전으로 파주시와 군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 없음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의견 없음	
	3. 대 안		
	○야동동 산지를 점유함에 따른 산지 훼손이 불가피함 ○생태적 보상 검토 : 본 사업으로 인한 산지 훼손을 보상하는 방안 적극 검토, 아래 그림에 보이는 끊어진 산지를 연결하여 생태연결로 보상	○산지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의견 없음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의견 없음	○의견 없음	
	6. 기 타		
	○크게 추가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추진과 부합하는 측면에서 합당한 사업으로 판단함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통장협의회 통장 협의회장 7통장 이윤희	Ⅰ. 총괄의견		
	○적정함	○적정함	반영
	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반영
	3. 대 안		
	○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반영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적당합니다	○적정함	반영
	6. 기 타		
	○	○의견 없음	반영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8통장 문관배	Ⅰ. 총괄의견		
	○의견없음	○의견 없음	
	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주변의 산업시설이 많음. 북동쪽 약 2㎞로 변경하면 좋을 듯함	○9사단과 협의결과에 따라 기 운영중인 군부대로 통합이전 할 계획임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의견 없음	
	3. 대 안		
	○의견없음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의견없음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공청회를 해야한다고 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겠음	
	6. 기 타		
	○	○의견 없음	

마.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국 방 부

수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결과 송부

1. 관련근거
   1) 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사업본부장 인천파주단지사업1부-3044('19.8.2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요청(운정3지구 00군부대 이전사업)
   2) 국방부 국방환경협력팀-3556('19.8.2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결과(심의의견)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 심의의견 1부. 끝.

국 방 부 장 관

주무관	홍혜진	환경사무관	남훈	국방환경협력팀장	전결 10/10 김공현

협조자

시행 국방환경협력팀-4261 (2019.10.10.) 접수 인천파주단지사업1부-3757 (2019.10.11.)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http://www.mnd.go.kr
전화 군)900-5864 일)02-748-5864 / 전송 02-748-5819 / hyejin0801@mnd.mil / 비공개(2,5)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11.25-27, 부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 총 괄 의 견

○ 파주시 내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이에 따른 대안 설정·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부지와 주변 지역의 지형·수계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설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부지는 생태·자연도 2, 3등급 지역으로써 지형 및 생태계 현황을 고려하여 훼손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3. 대안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시 일시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구체화하여 조치할 것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기준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측정 및 예상하여, 이에 따른 저감 방안 및 대책을 구체화하여 조치할 것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것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없음

2019. 9. 25.

심의위원 홍혜진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파주 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시 국방부 협의조건으로 군부대와 및 관련시설을 지구외(내)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동 계획과 관련된 상위·관련계획을 제시하고 연계성·부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 지형, 식생, 경관, 주변지역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2.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현황조사는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동·식물상 조사 시기, 조사 횟수, 동·식물 출현, 생육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획부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생태계 단절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지구 주변에 위치한 정온시설을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소음·진동, 분진 등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과 함께 요약서를 비치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 실시

2019. 9. .

심의위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박 향 미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통보서
(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 총 괄 의 견

○ 본 사업은 기존 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이므로 이전하게 되는 기존부대의 경우 토양오염 등 군부대의 장기주둔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적인 측면 및 인근 민간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입지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신규로 이전하게 되는 주둔지(11 방공단, 대대지휘소, 966 포대 추가 부지)를 확정하고 있는 바, 해당지역이 최적의 입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검토자료가 필요할 것임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측면에서 최적 입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검토 자료가 필요함
4.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신규 입지의 경우 생태, 지형지질 및 소음·진동 항목, 기존 부지의 경우 토양 오염, 폐기물 항목 등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19. 9. 16.

심의위원 최 준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통보서
[파주 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 총괄 의견

○ 동 사업계획은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부대양여 조건으로 군사시설(966-1, 966-2 포대)을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216,922㎡)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해야 함

○ 동 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지구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공사차량 진·출입로와 그 주변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

○ 사업지구 주변에 운영 및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동 계획과 관련되는 기존 개발계획, 상위계획,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제시해야 함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제시

3. 대안

○ 대안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설정된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도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17.11.27)」에 따라 충실히 작성해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
- 문헌조사를 활용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지구와 환경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정맥(지맥 포함) 등]과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분석·제시

○ 영향예측 및 결과는 저감방안 강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

- 저감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하되 그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특히, 법정보호종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중점 제시

(대기질, 온실가스) 사업시행 전·후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다양한 저감방안 마련

○ (수질) 공사 시 및 운영 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용수공급계획, 오수처리계획(오수발생량, 처리방법, 방류수 수질 등), 수질오염총량 할당 등 구체적인 자료 제시
-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토양)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실측조사를 통해 적정 처리방안을 수립·제시

- 특히 사업부지는 군사훈련시설로서 토양오염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및 처리계획에 대한 방안을 수립·제시해야 함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에 대한 성상별 처리계획 검토·제시

○ (소음·진동)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등)을 누락되지 않게 정확히 파악하고, 영향예측 결과를 면밀히 분석·제시
- 운영 시 사격훈련 등으로 인해 소음·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제시

○ (경관) 근·중·원경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함

6. 기 타

○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를 검토서"를 작성·제시해야 함

2019. 10.

심의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박 혜 인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통보서

(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 총 괄 의 견

○ 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 아래와 같이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충실히 반영·조치 될 수 있도록 요청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11공단 포진지가 이전하는 심학산 진지 일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누락되어 포진지 이전에 따른 직·간접 환경적 영향 분석을 위해 추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도록 조치

2. 토지이용 구상안

○ 966포대 통합이전부지 남동측의 경우, 산림식생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시 산림훼손 최소화 및 자연환경(식생, 동·식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대안

○ 파주 운정3지구 택지조성 사업부지 내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계획은 신도시개발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주변지역 환경영향 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인 군작전성 유지를 위해 금회 군사시설 이전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4.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사업대상지 약600m 반경 내 파주시에서 먹는물공동시설(파주시-16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솔우물 약수터(월롱면 덕은리 178-1)가 위치하고 있어, 해당지역 지하수질 측정위치 추가조치가 필요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해당지역 주민들이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금회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및 주민의견은 적극수렴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019. 10. .

심의위원 파주시 도시개발과 신도시개발팀장 윤 주 영

파주시 / 도시개발과 / 이정원 / 2019-10-04 09:16 / 개인정보 보호, 당신의 손끝에서 실천됩니다.) 1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통보서

(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 총 괄 의 견

○ 평가준비서 안에 이견이 없으나 장비이동 등 훈련시 대기오염물질(특히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검토에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준비서 의견에 동의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평가준비서 의견에 동의함

3. 대안
○ 평가준비서 의견에 동의함

4.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평가준비서 의견에 동의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평가준비서 의견에 동의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별도 의견 없음

2019. 9. 25 .

심의위원 파주시 대기관리팀장 심재우 (인)

파주시 / 환경보전과 / 심재우 / 2019-09-25 18:00 / 개인정보 보호, 당신의 손끝에서 실천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통보서

(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시 국방부 협의조건에 따라 군부대 3개소, 시설 1개소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시 국방부 협의조건에 따른 사업이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인접 지역의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개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일부 토지가 개발지이고 군시시설의 특성상 공사단계의 환경영향요소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영단계에서는 상주인원에 따른 용수, 오수, 비점오염물질, 생활폐기물 발생, 시설물 난방 및 차량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군용장비로 인한 소음발생 및 유류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의 환경영향요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의 운영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대체로 적정함

3. 대안

○ 적정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체로 적정하나 사업지구 북측에 임상이 양호한 산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항목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요구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택지개발 등으로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군사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6. 기타

○ 의견없음

2019. 8. 18.

심의위원 소속 김포대학교 조진규 (인)

- 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통보서

(파주운정3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 총 괄 의 견

○ 분산된 군사시설의 통합을 위한 이전으로 파주시와 군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야동동 산지를 점유함에 따른 산지훼손이 불가피함.
   ○ 생태적 보상 검토 : 본 사업으로 인한 산지 훼손을 보상하는 방안 적극 검토, 아래 그림에 보이는 끊어진 산지를 연결하여 생태연결로 보상

4.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크게 추가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추진과 부합하는 측면에서 합당한 사업으로 판단함

2019. 09. 25.

심의위원 김 연 미 (인)

